

상속세 납부 자원 마련, 종신보험 활용하라

Editor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Q

올해 65세인 김철수씨는 성공한 사업가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해가 지날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두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상속은 세금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김씨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상속세에 대해 어떤 대비도 안 해 놓았기 때문이다.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자신이 물려줄 자산은 부동산뿐이다. 자신이 죽고 난 뒤, 상속세로 인해 자녀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아닐지 염려가 된다.

A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행렬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다. 자녀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인데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사람이 피해 갈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세금은 불편한 존재다. 특히 지난 수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부자들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상속은 고인(故人)이 남긴 재산이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감안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의 중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상황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일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부모인 자신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상속세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 상황에 대비해야

김철수씨의 사례처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녀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처분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매매 자체가 쉽지 않고 물납을 통한 공매에 들어가게 되면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위험도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도 일정 수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가입 후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 대비

종신보험은 보통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민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

로 간주한다.

하지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로 수익자와 일치할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부모인 자신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내는 보험료의 출처 역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국세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서도 종신보험을 최적의 상속세 대비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속세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를 준비한다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고 절세효과를 극대화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 무사히 전할 수 있다. **M**